

Ask.koreadaily.com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

Q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문 =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

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

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하트홀리데이세일

Holiday Sale

한해동안 고마웠던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무료 배송
Free Shipping

HuBDIC Leg&Foot Compression Massagers

HuBDIC 하루 15분, 다양한 조합으로 맞춤형 마사지 모드

휴비딕 FE-7208 공기압 다리안마기

6가지 마사지 모드 및 3단계 강도레벨 ~~\$129.99~~ **\$7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수납편한 다단 적재/ 투명용기로 내용물 확인 손쉽게!

가프 전자렌지용기 심플북 24개

밀폐용기 400ml x 24EA ~~\$34.99~~ **\$23.99**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